



의안번호	제39호
------	------

**논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21. 4. 1.

# 논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9호
----------	------

제출연월일 : 2021. 4. 1.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 1. 제안이유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 개정 내용 및 행정안전부 「시군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참고 조례안」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규정(안 제2조)

- 관할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을 규정하여 위험도 평가단의 활용도를 높임

나. 위험도 평가단 구성방식 일부변경(안 제3조)

- 성별특성을 반영하여 여성위원을 1명이상 포함

다. 위험도 평가단 자격요건 일부변경(안 제3조)

- **【당초】**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변경】** 건축(건축구조) 및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사 이상
- **【당초】**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  
**【변경】**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라. 위험도 평가단 교육·훈련 기준 추가(안 제5조)

- 평가단원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한 경우
- 평가단원이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붙임 참조

다.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라. 부서협의 결과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일부수용

권고안	수용계획	
	수용 여부	사유
<p>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대책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 이라 한다)을 구성한다.</p> <p>②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를 위촉 또는 임명하여 구성한다.</p> <p><b>1. 위험도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b></p> <p><b>2. 지역주민의 대표. 단, 성별 특성을 반영하여 여성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구성한다.(추가)</b></p> <p>※ 점검포인트 2. 3 관련한 개선으로, 지역주민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단 구성시 성별, 연령, 지역등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p>	<p>일부 수용</p>	<p>1. 연령, 지역을 고려한 평가단 구성은 지역 여건상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평가단 15명 이내 구성으로 개선 의견 일부 수용.</p> <p>2. 지역주민의 대표 포함안은 지역여건상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여성위원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개선 의견 일부 수용.</p>

3)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 아님

마. 입법예고

1) 예고기간: 2021. 02. 17. ~ 2021. 03. 09.(20일)

2) 예고결과: 의견 없음

바. 충청남도 소관실과 : 자연재난과(☎ 041-635-2187)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 논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논산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대책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을 구성하되, 성별 특성을 반영하여 여성위원을 1명이상 포함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위촉 또는 임명하여 구성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시 기술직공무원 중 도시, 도로, 재해대책, 건축담당

마.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시 기술직공무원 중 도시, 도로, 재해대책, 건축담당

라.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을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실장 또는 과장 중에서 임명한다.

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는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⑤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을 관할 구역의 제2항 각 호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 ①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이 해당 연도의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한 경우
2. 평가단원이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이수한 경우
3. 대책본부장이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하여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해당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1. 위험(별지 제3호서식)
2. 사용시 유의(별지 제4호서식)
3. 안전(별지 제5호서식)

④ 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게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남도 및 인근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충청남도 및 인근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경비지원)**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임기 및 해촉)** 위촉된 평가단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또한 당연직 평가단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때
2. 위험도 평가단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안전총괄과장	강 선 환
	자연재난팀장	조 정 구
	담 당 자	황 재 구 (746-6349)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우리 시는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평가단 등록 및 운영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평가단 운영을 할 수 없어 평가단 등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보험 가입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평가단 운영(상해보험 가입 등)을 할 수 없어 등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보험사	보험 가입	주민등록번호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평가단 운영(상해보험 가입 등)을 할 수 없어 등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4조 관련)

< 앞 >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 명 :

소 속 :

주 소 :

위 사람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85mm×55mm

< 뒤 >

본 단원증을 분실, 습득하신 분께서는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Tel : 041-746-64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85mm×55mm

[별지 제3호서식] (제6조 관련)

위험도 평가 결과 <빨강>

# 위험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함.**

- 평가일시 :
- 위험요소 : 구조체(000,000), 낙하물(000,000)
- 점검의견 : 000 주의 필요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결과입니다.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별지 제4호서식] (제6조 관련)

위험도 평가 결과 <노랑>

# 사용 시 유의

**이 시설물의 거주 및 출입 시 유의바람.**

- 평가일시 :
- 주의사항 : 000 주의 필요
- 점검의견 : 000 조치 시 사용가능

※ 본 위험도 평가결과는 평가시의 상태만을 점검한 결과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결과입니다.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별지 제5호서식] (제6조 관련)

위험도 평가 결과 <초록>

# 사용가능

**이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평가일시 :  
 평가의견 : 000 조치 필요

※ 본 위험도 평가결과는 평가시의 상태만을 점검한 결과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결과입니다.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논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u>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는 지진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u></p> <p><u>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u></p>	<p><u>논산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lt;삭 제&gt;</u></p>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  
이라 한다)은 위험도 평가를  
위해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 지역본부장”  
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  
단원”이라 한다)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논산시  
(이하 “시”라 한다)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  
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삭 제>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시 관할구역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시 관할구역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시 지역본부장이  
실시한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삭 제>  
판단 등) ① 시 지역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된 경우
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충청남도 재난  
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충청남도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신 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① 시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논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  
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  
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대책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  
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 방재  
업무국장으로 한다.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  
이라 한다)을 구성하되, 성별 특성을  
반영하여 여성위원을 1명이상  
포함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  
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위촉  
또는 임명하여 구성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  
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시 기술직공무원 중 도시,  
도로, 재해대책, 건축담당

마.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  
(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시 기술직공무원 중 도시,  
도로, 재해대책, 건축담당

라.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위험도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제외하고 15명 이내로 한다.

④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  
다)을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  
하는 실장·국장 또는 과장 중에  
서 임명한다.

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는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  
하는 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⑤ 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2. 시 기술직공무원 중 도시, 도로, 재해대책, 건축담당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
4. 시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

⑥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⑦ 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충청남도 지역본부장이 시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시 지역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을 관할 구역의 제2항 각 호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신 설>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 ①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이 해당 연도의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한 경우

2. 평가단원이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이수한 경우

3. 대책본부장이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제6조(임기 및 위촉해제) 위촉된

제10조(임기 및 해촉) -----

평가단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평가단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3. (생략)

제7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시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시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  
-----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또한 -----  
-----  
-----  
-----.

1.~3. (현행과 같음)

<삭 제>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기타 위험도 평가시 필요한 사항 등

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위험! 별지 제3호서식
2. 사용제한 별지 제4호서식
3. 사용가능 별지 제5호서식

④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

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하여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해당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1. 위험(별지 제3호서식)
2. 사용시 유의(별지 제4호서식)
3. 안전(별지 제5호서식)

④ 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게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9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시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충청남도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삭 제>

시설물 후속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10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

요청 등) ① 시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충청남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② 시 지역본부장은 충청남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지원을 요청한 시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남도 및 인근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충청남도 및 인근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경비지원)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를 「논산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경비지원) -----  
-----  
-----  
-----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  
-----  
-----  
대책본부장이 -----.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9조(경비지원)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논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안 제9조에 따라 평가단 운영에 따른 필요 경비는 지진 피해시설물의 종류와 피해 규모, 범위에 따라 유동적이며 피해의 발생 시기 및 빈도의 정확한 예측이 곤란하므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따라서,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지진 피해시설물 발생에 따라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3. 작성자

안전총괄과장 강 선 환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 (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대책본부에 본부장과 차장을 둔다.

③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차장이 된다.

1.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거나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차장이 된다.

⑥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해당 대규모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 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및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의 대상·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대상 시설물의 관리자·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위험도 평가의 목적·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위험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통지

하거나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용 시 주의사항과 함께 시설물 관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의 평가 일시 및 결과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도지사 등의 의견을 들어 지침을 마련하고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군·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군·구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 ①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

시·도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4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또는 인근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시·도 및 다른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경비지원)**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